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2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2
※ 참고자료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6

I. 제안경위

2026년 4월 17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48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안 제21조의3 신설 및 제48조의8 신설),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부칙 제2조)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산재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신 설>	경우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제48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48조의6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검토의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1조¹⁾ 및 국가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²⁾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내지는 소위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사업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영세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영세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유효기간

-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3개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하여는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수준과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6년 두루누리 사업 예산 규모는 국민연금 7,395억원, 고용보험 1,791억원으로 운영비 제외 9,186억원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산재보험료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개요('26년 기준)

-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기준)** ①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②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 ①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월 최대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87,400원 범위에서 지원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 보험료 지원절차

-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피보험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료 지원금 지원